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9. 4 선고 2020가단738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9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5,130,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7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김동휘

별지